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6. 1. 1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12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2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제118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6. 1. 18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영 남

가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(실비보상)에 의거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시민의식 향상으로 한 차원 높은 주민행정서비스 욕구 및 심야 주·정차단속 등 당직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실비보상과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행 당직수당지급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당직수당지급액을 현행 1인당 35,000원에서 50,000원으로 인상
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건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당직(일·숙직)수당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. 11. 25일 조례

제549호로 제정되고 2004. 1. 1부터 시행된 동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당직수당 지급액을 현행 1인당 35,000원에서 50,000원으로 15,000원을 인상하고자하는 것으로 지난 2005. 12. 2일 마포구 직장협의회와 집행부간의 2006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상 결과 협의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약 6,532만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6. 1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(실비보상)에 의거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시민의 식향상으로 한 차원 높은 주민행정서비스 욕구 및 심야 주·정차단속 등 당직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실비보상과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행 당직수당지급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개정골자

당직수당지급액을 현행 1인당 35,000원에서 50,000원으로 15,000원 인상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법(2002.12.18, 법률 제6786호) 제46조

나.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5.12.19)

다. 예산조치 : 2006년도 추경에 반영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 : 생략함(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함)
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- (3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본문중 “35,000원”을 “5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)</p> <p>① 당직수당은 일·숙직 당직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<u>35,000원</u>씩 지급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3조(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)</p> <p>① ----- ----- <u>50,000원</u>-----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